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07. 3. 28.

사회건설위원회

### 1. 審 査 經 過

- 가. 제출일자 : 2007년 3월 19일
- 나.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 다. 회부일자 : 2007년 3월 22일
- 라. 상정일자 : 제127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2007년 3월 26일)

### 2. 提 案 說 明 的 要 旨 ( 제안 설명자 :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

#### 가. 제 안 이 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의 제정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 운영 조례」의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함.

#### 나. 주 요 내 용

-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둠(안 제5조 내지 제5조의5)
-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 목인 장·관·항의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구의회 의결을 얻도록 함(안 제10조)
- 기금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 회계 관직을 조정함(안 제11조 )

### 3. 專 門 委 員 檢 討 報 告 的 要 旨 ( 專 門 委 員 이 남 식 )

- 2006.1.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관련법령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참고로 2007년 우리 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규모는 4억 8천2백만원임.

### 4. 審 査 結 課 : 原 案 可 決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6
----------	----

제출년월일 : 2007. 3. .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의 제정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영 조례」의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기금의 여유자금을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는 근거 신설 (안 제4조의5)
- 서울특별시영등포구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및 구성 (안 제5조)
- 위원회의 기능, 운영 등 신설 (안 제5조의3 및 제5조의4)
-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안 제10조)
-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의 책임에 대한 근거 개정 (안 제11조)

## 3.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영 조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기타

- (1) 입법예고 : 2006.11. 7. ~ 2006. 11. 28.(20일간)

## 서울특별시영등포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영등포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조례”로 한다.

제1조(목적)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서울특별시영등포구기초생활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2. 구 이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제2항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하고, 제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기금의 여유자금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구청장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사회복지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예산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가정복지과장
2.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명
3. 복지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덕망을 가진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④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직위를 상실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위촉된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생활보장담당 주사가 된다.

제5조 다음에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5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의3(위원회의 기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기금운용계획의 수립
- 2.기금운용 성과분석
- 3.주요항목인 장·관·항의 지출금액 변경
- 4.기금의 조성·운용 및 결산
- 5.기타 기금운용관리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의4(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는 매년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의5(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중** “서울특별시영등포구”를 “영등포구”로 하고, 동조제2호중 “국민기초보장법시행규칙”을 “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①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을 매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인 장·관·항의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제2항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사회복지담당주사”를 “생활보장담당주사”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의 책임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9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기금의 결산)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운용성과 분석결과 및 복식부기회계처리에 관한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국민기초생활보장법</u> (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u>기초생활보장기금</u> (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국민기초생활보장법</u> 」 -----		
제2조(기금의 조성)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u>서울특별시 및 영등포구의 출연금</u> 2. <u>서울특별시 또는 영등포구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u> 3. ~ 5. (생략)		제2조(기금의 조성) -----		1. <u>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u> 2. <u>구 이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u> 3. ~ 5. (현행과 같음)
제4조(기금의 관리·운영) ① (생략) ② <u>구청장</u> 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영 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 (생략) ④ (생략)		제4조(기금의 관리·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u>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u> (이하 " <u>구청장</u> "이라 한다) -----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u>기금의 여유자금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u>
제5조(기금운영심의)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등포구기초생활보장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나, 유사기능의 영등포구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이를 대신한다. 1. 동 조례 제3조의 기금사업의 용도 2. 기금의 조성·운영 및 결산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u>구청장</u> 은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u>서울특별시영등포구기초생활보장기금 운영심의위원회</u> (이하 " <u>위원회</u> "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3. 기타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의 심의</p>	<p>③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사회복지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획예산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가정복지과장</li> <li>2.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명</li> <li>3. 복지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덕망을 가진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li> </ol> <p>④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직위를 상실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p> <p>⑤위촉된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p> <p>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생활보장담당주사가 된다.</p>
<p style="text-align: right;">&lt;신 설&gt;</p>	<p>제5조의2(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p> <p>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lt;신 설&gt;</p>	<p>제5조의3(위원회의 기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기금운용계획의 수립</li> <li>2.기금운용 성과분석</li> <li>3.주요항목인 장·관·항의 지출금액 변경</li> </ol>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4.기금의 조성·운용 및 결산 5.기타 기금운용관리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5조의4(위원회의 운영)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는 매년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 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제5조의5(수당 등)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거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u>서울특별시영등포구</u> 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법 제18조 및 <u>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u>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3. ~ 5. (생 략)	제6조(지원대상) ----- ----- <u>영등포구</u> ----- ----- ----- 1. (현행과 같음) 2. ----- <u>법 시행규칙</u> ----- ----- 3. ~ 5. (현행과 같음)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①구청장은 매회계년도 개시 전에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①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②구청장은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을 매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③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항목인 장·관·항의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5 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1조(기금관리공무원)</p> <p>① (생략)</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금운용관은 <u>주민생활지원국장</u>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u>사회복지담당주사</u>로 한다.</p>	<p>제11조(기금관리공무원)</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u>사회복지과장</u> ----- <u>생활보장담당주사</u> -----.</p> <p>③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의 책임에 대하여서는 「지방재정법」 제94조의 규정을 준수한다.</p>
<p>제12조(결산 및 보고) ①구청장은 매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p>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2조(기금의 결산)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운용성과 분석결과 및 복식부기회계처리에 관한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